

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61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5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초중고 연계 다문화 통합교육 기반 마련 등 안산만의 특구 모델 구축 촉진을 위해 다문화교육 관련 비영리법인(또는 단체) 위탁 조항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‘약칭’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2조)
 - “시장”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개정
- ‘위탁운영’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)
 - 특구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근거 조항 및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준용, 위탁 기간(3년 이내) 명시
- ‘지원 등’, ‘시행규칙’에 관한 사항 조항 변경(안 제5조, 안 제6조)
 - 제4조 지원 조항을 제5조, 제5조 시행규칙 조항을 제6조로 각각 변경

개정 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1. 4. 1. ~ 2021. 4. 21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붙임 1 >

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시장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종전의 제4조) 중 “안산시장” 을 “시장” 으로, “범위 안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교육청소년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육청소년과장 연 창 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혁신교육팀장 박 세 광
	담당자 성명·전화	박 세 광 (행정 3456)

< 불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사업) 「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1조제5호에 서 말하는 “그 밖에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<u>시장</u>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6. ----- <u>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
〈신 설〉	제4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제4조(지원 등) <u>안산시장</u> 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	제5조(지원 등) <u>시장</u>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 -----.
제5조 (생 략)	제6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
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8-619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. 6. 18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민간위탁에 관한 필요사항을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, 민간위탁 기간에 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, 입법의 간결성을 위해 불필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민간위탁 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 함.(안 제4조제2항)

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위탁운영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〈신 설〉	<p>제4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위탁운영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p>